

서울특별시의회
제32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
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3. 12.

서울특별시의회
우형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양천3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

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
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,

최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

‘자살’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,

서울시의 학생자살예방 관련 조례는

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및 사후지원 협력체계가

상대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며,

□ 이에 학생자살 이후 가족, 주위 학생, 교직원 등의

사후관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

사후관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및

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홍보와 캠페인 등 구축,

그리고 사전 상담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통해

자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4조 제7호를 신설하여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‘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’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사후 대응체계 및 홍보, 캠페인 구축에 대한 예방계획 조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의 경우, 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에 있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및 전문가 컨설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9조의 경우, 학생자살 예방계획에서 규정한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으로 조항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,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대한 학교장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
- 안 제11조의 경우,
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위한
교육감의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및
확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마지막으로, 안 제12조의 경우,
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에 대한
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자살예방센터 등
기관·단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